

大邱直轄市達西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運營에 관한條例(案)

제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3. . . .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기획감사실)

□ 提案理由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대구직할시 달서구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달서구의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자함.

□ 主要骨子

- 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나.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 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
- 라.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 마.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바.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 처리에 관한 사항

□ 根據法令

- 가. 공직자 윤리법 제9조

□ 條例案 : 별첨

大邱直轄市達西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運營에 관한條例(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 달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전항 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전항 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 4 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5 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에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된 사항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준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각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국가기관”은 “소속기관”으로 “등록기관(법 제5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 제8호 제9호 및 제12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같다)”으로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대구직할시 달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본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조례에 규정한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